성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

제출일자 : 2015년 12월 일
제 출 자 : 성 주 군 수

1. 개정이유

○ 사회복지분야 등 지방재정의 수요가 증가하여 체납자에 대한 지방보조금 지원 제한을 명문화하여, 지방세입 증대 및 자주재원을 확보하고자 개정코자 함.

2. 주요내용

○ 교부결정(안 제15조제5호)

- 교부결정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여부를 확인

○ 별지서식 신설(제1호~제11호)

- 지방보조금 관련 서식 추가

3. 참고사항

가. 근거법령 : 지방재정법 시행령

나. 기 타

1) 예산조치 : 해당없음

2) 규제심사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

3) 성별영향분석평가 : 원안 동의

4) 입법예고 : 의견없음(2015. 10. 22 ~ 11. 11)